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시행 등〉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98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11.
3. 회부연월일 : 2025. 8.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 수가 1만 5천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 수는 3천명 넘게 감소하여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

이같은 상황은 공무원의 세대 편중, 조직의 디지털 역량 저하, 청년 공무원 유출 등의 문제가 되므로, 보수체계 개편, 조직문화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장이 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인사혁신처장(이하 ‘인사혁신처장등’이라 함)에게 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 조직 신설, 관련 공무원 증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개선하게 하기 위하여 세대 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및 제5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인재개발)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0조(인재개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각 기관의 장은 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 조직 신설, 관련 공무원 증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④ (생략)</u> <u><신설></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u>제50조의3(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u>

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대균형 인력 유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대별 공무원 경력개발, 전보 등에 관한 사항
2. 세대별 공무원 분포 및 충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최근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청년 공무원의 이탈이 증가함에 따라¹⁾, 공직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²⁾

공직사회의 고령화는 디지털 역량 저하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조직 활력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 내 세대 균형 확보 및 조직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등에게 세대균형 인력 유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관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등에게 세대균형 인력 유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관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직사회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감되는 측면이 있음.

1) □ 인사혁신처 주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 추이(2021~2025년)

◦ 5급 공채: ('21)43.5:1→('22)37.9:1→('23)35.6:1→('24)35.0:1→('25)34.4:1

◦ 7급 공채: ('21)47.8:1→('22)42.7:1→('23)40.4:1→('24)40.6:1→('25)44.6:1

◦ 9급 공채: ('21)35.0:1→('22)29.2:1→('23)22.8:1→('24)21.8:1→('25)24.3:1

□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수 추이(공무원연금 통계 기준)(2020~2024년)

◦ ('19)6,500→('20)9,009→('21)10,426→('22)13,032→('23)13,568→('24)12,013

2)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연령대별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9.8→11.3%), 30대(30.3→31.0%), 50대(26.6→27.2%)는 소폭 증가하였고 40대(33.3→30.5%)는 감소하였으나, 세대별 인력 편중 현상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신규 충원 인력이 대체로 청년 세대에서 충원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역량 저하와는 별개로 공직사회의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상 공무원의 임용은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우대 조치, 즉 적극적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³⁾ 개정안의 나이에 따른 경력개발 및 채용 등은 이와 같은 적극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임.

둘째, 현재 공무원 교육훈련 및 인재개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조직이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및 하위 법령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인사행정의

3)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4)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 실시,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에 관한 사항을 동법에 규정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공무원의 임용은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에 따라 나이를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할 우려가 있고, 디지털교육이나 조직 신설·증원 등 세부사항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이나 공무원 증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 부처의 직제와 직제시행규칙, 대통령령(「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 ⑩ (생략)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342